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보직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주요 개정사항

1.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제5조)
 - 제10조의 본청전입 요건과 절차 및 방법 등에 의한 전입자격을 갖춘 자로 함
2.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의 내신(제12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과 그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은 법적 검토 진행중
3. 울릉지역 2년 이상 희망우선전보의 경우 징계처분으로 전보된 자는 제외
(제13조의3제1항제3호)
4.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희망지역 우선전보
(제13조의3제1항제4호)
5. 동일교육지원청 6급이하 3년 부서만기 명확화(단, 2개과 이상인 교육지원청과 군지역교육지원청 7급이하는 인사형편에 따라 5년)
(제13조의3제2항제3항)
6. 조리직렬 전보기준 마련(제13조의3제7항)
7. 불문경고자도 전보조치 근거 마련(제14조제1항제4호)
8. 기관(부서) 특성을 감안한 보직이 필요한 경우 전보서열평점과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는 조항 신설(제14조제6항)
9. [별표 1]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 변경(교육지원청 매월 0.2점 → 0.25점)
10. 일본식 표기 수정 및 법령에 맞는 표기법 수정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p> <p>-----</p> <p>「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p> <p>-----.</p>	
<p>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보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p> <p>-----</p> <p>포함한다. 이하 같다.)</p> <p>-----.</p>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행	개정안	
<p>1. 해당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균무경력, 전문성, 직무의 곤란성, 책임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보직을 부여한다.</p> <p>2. 장애공무원은 신체적 조건·특기·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한다.</p> <p>3. 보직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학교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인사제도 개선에 참여시킬 수 있다.</p>		
<p>제4조(신규임용자) ① 신규임용자는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와 생활근거지를 <u>참작하여</u> 상위직급이 있는 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신규임용자가 상위직급이 없는 기관에 배치된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6급 이상의 행정실장이 근무하는 학교 등에서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받게 할 수 있다.</p>	<p>제4조(신규임용자)</p> <p>① ----- ---고려하여----- ----- 다만, -----.</p>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행	개정안	
<p>제5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감사담당공무원을 <u>보직함에 있어서는</u>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교육지원청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상훈법」에 따라 훈장을 받은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각종 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4. 그 밖의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징계처분 또는 문책(인사조치 요구된 자)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제5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 <u>보직할 경우 제10조의 요건과 절차 및 방법</u> <u>등에 의한 도교육청</u> <u>전입 자격을 갖춘 자</u> <u>(도교육청 전입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u> ----- -----.</p>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행	개정안	
<p>3. 뇌물수수,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p> <p>4. 그 밖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p> <p>③ 감사담당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를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야 한다.</p>		
제6조(전문직위 지정) 임용권자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7조(개방형직위 지정)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p>제8조(직위공모) ①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특정 직위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직위공모제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p> <p>② 직위공모제에 의해 선발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p> <p>③ 직위공모부서 중 인사부서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p>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행	개정안	
<p>④ 직위공모제에 의해 근무한 기간은 제13조제2항과 제13조의3제4항의 근무기간에 포함한다.</p> <p>⑤ 직위공모시 인사, 감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p>		
<p>제9조(타기관의 전입)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7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총 근무년 수 10년 이하인 자. 단, 시·도간 1:1 인사교류자 제외</p> <p>2.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p>	<p>제9조(타기관의 전입)</p> <p>----- 다만, -----.</p>	
<p>제10조(도교육청 전입 등) ① 5급 이하 교육행정직공무원의 도교육청 전입은 해당 직급에서 학교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5급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최초 전입 시에만 적용한다. 다만, 전입 희망자가 없거나 충원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②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도교육청 전입희망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거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면평가 등을 추가 할 수 있다. 다만, 전입희망자가 없거나 희망자 중 적임자가 없을 때는 전입시험 등과 관계없이 발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전입시험 방법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정한다.</p>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행	개정안	
<p>제11조(정기전보 시기) 정기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2회(1월 1일, 7월 1일) 실시하며, 정기전보발령은 7일전까지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1조(전보 시기)</p> <p>-----</p> <p>-----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전보 할 수 있다.</p> <p>② 정기전보 발령 시향은 7일전까지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2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의 내신)</p> <p><신설></p> <p>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전보를 원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보내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보순위 평정표를 <u>전보권자</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의 내신)</p> <p>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강등 및 정직·직위해제처분기간,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으로 1년 6개월(다만, 울릉지역은 1년) 이상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의한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한 자 중</p> <p>-----</p> <p>-----</p> <p>-----</p> <p><u>임용권자</u>-----.</p>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행	개정안	
<p>제13조(전보기준)</p> <p>① <u>전보는 소속 기관장의 전보내신 을 최대한 존중하고 해당 공무원의 생활근거지와 희망지를 고려하여 전보한다.</u> 단, 정원 변동, 현 근무처 만기, 그 밖에 인사형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내신서와 관계없이 희망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p> <p>② 4급 이하 공무원이 <u>동일부서</u>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타 직위 또는 타 부서(기관)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 공업, 보건, 전산 및 담당업무의 특수성(비서업무 등)과 3개과 이상이 설치되지 않은 교육지원청 내부서 전보 등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직위 또는 부서로 전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청: 재무정보과의 <u>지출업무담당사무관 및 경리업무담당주사</u> 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인사업무담당)주사 및 경리업무담당 주사 3. 직속기관: 지출업무담당 과장 또는 지출업무담당 주사 <p>④ 5급 이하 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는 인사분야 보직을 금지한다.</p>	<p>제13조(전보기준)</p> <p>① <u>전보는 -----</u> -----. <u>다만-----.</u></p> <p>② 4급 이하 공무원이 <u>동일부서(본청과 교육지원청은 과단위, 그 밖의 기관은 기관단위)</u>에서----- ----- <u>등)등 -----.</u></p> <p>③ ----- ----- ----- -----.</p> <p>1. ---<u>경리업무담당주사</u></p>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행	개정안	
<p>제13조의2(5급 공무원의 전보)</p> <p>① 5급 승진임용자는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에 우선 배치하되, 특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도교육청 업무담당사무관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다른 기 관으로 전보한다. ③ 교육지원청 과장 직위에서 4 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직위 로 전보한다. 단, 교육행정 이외 의 직렬은 예외로 한다. ④ 인사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u>2년 이상 근속한 자에</u> <u>대하여는 본인의</u> 희망과 관계없 이 전보할 수 있다.</p>	<p>제13조의2(5급이상 공무 원의 전보)</p> <p>③ ----- <u>다만-----.</u></p> <p>④ ----- <u>본인-----</u> -----.</p>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행	개정안	
<p>제13조의3(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① 6급이하 공무원이 경합지역에 전보를 희망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이하 "평점기준" 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전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지역(시·군)에서 6급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타 지역(시·군)으로 전보하되 해당 시·군에서 장기근속한 순에 따라 전보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자는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도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2. <u>다음의</u> 경우에는 평점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승진하는 자 다. 정원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보하는 자 라. 특별한 사유로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자 마. 교육행정 이외의 직렬에 해당하는 자 바. 제14조제2항의 학교장이 전입요청한 자 3. 울릉지역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자가 타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할 때에는 평점기준에 관계없이 희망지역에 우선 전보 할 수 있다.<단서 신설> 4. <u>중증장애인</u>은 평점 기준에 관계없이 희망지역에 우선 전보 할 수 있다. 	<p>제13조의3(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p> <p>2. <u>다음의 각 목</u> -- -----.</p> <p>3. ----- <u>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전보된 자는 제외한다.</u></p> <p>4. <u>공무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u> -----.</p>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행	개정안	
<p>② 동일 <u>교육지원청 6급</u>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타 기관으로 전보하고 2년 이내에는 전임 교육지원청에 전보하지 않는다. 단, 동일한 업무 담당주사로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p> <p>③ <u>교육지원청에</u> 근무하는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u>동일 교육지원청에서</u>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p> <p>④ 도교육청 6급 일반직공무원으로서 8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단,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자는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도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p> <p>⑤ <삭제 2017.11.13.></p> <p>⑥ 1일3식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u>조리 및 위생 직렬</u> 공무원은 동일지역(시·군)내 1일1식 <u>기관에서 장기근속한 자와 순환전보 한다.</u> 단, 1일 3식 기관에서 본인이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신설></p>	<p>② --- <u>교육지원청에서 6급이하 공무원</u>----- ----- 전보한다. <단서 삭제></p> <p>③ <u>제1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교육지원청(군단위에 해당 한다)에서</u>-----<u>5년</u>-----.</p> <p>④ ----- <u>다만</u>-----.</p> <p>⑤ -----.</p> <p>⑥ ----- <u>조리직렬</u> ----- <u>기관으로 전보한다.</u> <u>다만</u>, 1일 3식 기관에서 본인이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⑦ <u>1일 3식 기관으로의 전보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u> <u>1. 근무희망자</u> <u>2. 타시·군 전입자</u> <u>3. 해당지역 내 1일1식 기관에서 연속으로 장기 근무한 자</u> <u>4. 신규입용자</u></p>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행	개정안	
<p>제15조(정보의 유예)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제13조 내지 제13조의3</u>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정하여 정보를 유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행정 개선에 기여한 자 2.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자 3.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장의 유예 신청이 있는 자 4. 현 <u>근무처</u> 만기자로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공무원 	<p>제15조(정보의 유예) ---제13조부터 제13조의 3까지-----.</p> <p>4. 현 <u>기관(부서)</u>-- -----</p>	
<p>제16조(정보서열명부 평점 공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기정보 후 지역별, 직급별 정보서열명부 평점 하한점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p>		
<p>제17조(교육지원청 보직관리 규정) 이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은 2018년 7월 1일 전보자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릉지역 1년 적용은 시행일 이후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전보된 자는 제13조의3제2항및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3조의2제4항의 경우 2021.1.1.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개정 2011. 1. 17, 2012. 3. 15, 2016. 2. 18>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표

구분	기 준	비 고
현직급 경력점	현직급 근무기간 : 매월 0.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점(60개월) : 18점
지 역 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2의 지역별(시·군) 급지 구분표에 의한 점수 최상급지: 매월 0.15점 최하급지: 매월 0.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점(60개월) : 36점 - 최상급지 : 9.00점 - 최하급지 : 36.00점
근무기관 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초등학교 매월 0.20점 ▫ 중학교 매월 0.15점 ▫ 고등학교(농업계열) 매월 0.25점 ▫ 고등학교(전문계열 및 일반계열) 매월 0.20점 ▫ 특수학교 매월 0.15점 ▫ 행정실 1인 배치소규모학교(유치원 포함) 매월 0.25점 ▫ 통합학교/병설학교 매월 0.20점 ▫ 교육지원청 매월 0.2점 → 0.25점 ▫ 교육지원청소속기관 매월 0.15점 ▫ 도교육청 매월 0.4점 ▫ 직속기관 매월 0.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점(60개월) : 24점 - 최상 : 24.00점 - 최하 : 9.00점
근무성적 가 점	최근 근무성적(1회)을 만점 10점으로 환산 ※ 예시:(최근근무성적평정점수 70/70)*10점 =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점 10.00점
포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이상 3.0점 ▫ 장관이상 2.0점 ▫ 교육감 1.5점 ▫ 교육장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점 3점) - 포상 1개만 평점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발령기준일 1년 이내 처분된 경고(1건당) 감2점 	
	포상점 및 감점이 없을 경우 총 만점	88.00점

- 현직급 경력점 : 현 직급의 경력만 대상(단, 8급 공무원의 경우 9급 경력을 합산함)
- 지역(시·군) 가점 및 근무기관 가점은 직급에 관계없이 최근 5년간 경력을 인정하되 현재직 기관의 경력은 최대 3년간만 인정. 단, 5년 이내에 전보된 경우에는 최근전보일 이전 가점은 70%인정
- 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은 지역 및 근무기관 가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 파견기간은 파견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
- 포상점 : 포상일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실적만 적용
- 정계처분기간 및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강등18월,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의 기간은 현직급경력점에서 제외